

초점 3: 노인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공급 체계¹⁾

石才恩(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1. 머리말

인구고령화와 가족보호 잠재력의 약화로 증가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호서비스 하부구조(infra-structure)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서비스 하부구조는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institution) 및 인력(manpower)을 의미한다.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과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장기요양보호를 위한 사회적 재원조달장치(예컨대, 장기요양보험)도 별다른 소용이 없고, 재가보호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도 가능하지 않다. 즉, 장기요양보호 위험에 대비하여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한 독일과 일본의 경우²⁾에도, 장기요양보호 욕구 발생시 서비스를 구매할 재원은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마련하였으나 막상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마련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경계하여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이전에 서비스 공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확충에 주력해 왔다. 특히, 장기요양보호를 위한 서비스 기반이 취약했던 일본의 경우 1989년 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으로 골드플랜³⁾을 마련하여 장기요양보호 시설 및 인력확충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하였으며, 1994년에는 골드플랜 목표를 보다 상향조정하는 신골드플랜⁴⁾을 마련하여 시설 및 인력확충에 주력함으로써, 2000년 개호보험 도입에 앞서 장기요양보호서비스 공급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해 왔다.

한편,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가능한 한 자신이 살던 곳에서 보호(aging in place)하는데 대한 원칙적 합의 하에 시설보호 중심에서 재가보호 중심으로의 이동이 세계적인 정책경향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가보호로의 중심 이동이 성공적인 국가는 스웨덴, 덴마크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 들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OECD, 1996). 영국은 정책적으로는 재가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시설보호 비중이 더 높고, 독일과 일본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와 같이 모든 국가가 시설보호 중심에서 재가보호로의 중심 이동을 시도하고 있으나, 공식적 보호제공 기반이 풍부하고 건실한 스웨덴을 제외하고는 재가보호로의 균형이동에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재가보호로의 이동이 서비스 하부구조의 구축을 통하여 얼마나 보호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는가의 정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공식적인 서비스의 하부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시설보호에서 재가보호로의 균형이동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1) 본고는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의 김태협(성심여대), 배상수(한림대), 송미순(서울대), 이가옥(성공회대) 교수님과 공동작업과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며, 특히 재가보호서비스 공급량의 설정은 재가보호협회의 권의를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2) 독일은 1995년에 장기요양보험(Pflege-Versicherung)을 도입하였으며, 일본은 2000년 4월부터 개호보험(介護保険)을 도입하였다.

3) 일본은 1989년 12월에 『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 소위 『골드플랜』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목표내용은 1990년도부터 10년간 가정봉사원 10만명, 일시보호 5만명분, 주간서비스센터 1만개소, 재가보호지원센터 1만개소, 특별양호노인홈 24만명분 등을 마련하는 고령자 보건복지서비스 정비 계획이다.

4) 일본은 1994년 3월말까지 모두 집계한 전국의 노인보건복지계획의 목표지를 집계한 결과 골드플랜의 목표지를 대폭적으로 상회하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1994년 12월에 골드플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후반 5년간에 달성해야 할 목표지를 인상한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의 수정에 관하여' 소위 『신골드플랜』을 대강성, 후생성, 자치성의 3대선에 의한 합의로 확정하였다. 그 목표내용은 가정봉사원 17만명, 단기보호 6만명분, 주간서비스·주간보호소 1만 7천개소, 특별양호노인홈 29만명분, 노인보건시설 28만명분 등이다. 여기에 24시간 순회 가정봉사원서비스나 특별양호노인홈 개설화(個室化)의 추진 등 새로운 시책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장기요양보호의 사회적 욕구 대응에 필수적 조건인 장기요양서비스 공급기반으로서의 시설과 인력의 필요공급량을 추계해 보고자 한다.

2. 장기요양보호서비스 공급원칙 및 공급모형

본 고에서는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기본적인 공급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장기요양보호서비스 공급량은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의 욕구와 가족수발 상태를 감안하여 설정토록 한다. 즉, 욕구수준별로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되, 그 기준을 노인의 장애수준(경중/중중/최중중) 및 수발자 특성(수발자 건강⁵⁾, 취업 등 수발자 상황에 따른 부양부담 파악)으로 삼았다.

둘째, 장기요양보호서비스 공급량은 현실적 자원의 한계에 상관없이 규범적(normative) 욕구에 기반하여 설정토록 한다.

셋째, 원칙적으로 가능한 한 노인들이 재가에서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의 상태와 가족수발 상태에 따라 시설보호와 재가보호의 적정 역할분담 비중을 설정토록 한다. 즉, 재가보호 강조의 원칙 하에 시설보호서비스 수요는 보수적으로 추계하되, 거동이 불가능하고 수발자가 없거나 수발자가 건강악화(노령) 혹은 취업으로 실질적 수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실제에서는 노인의 욕구를 개별적으로 사정하여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제공하겠지만, 추계에서는 동일한 범주의 노인의 욕구 충족에 필요한 평균적인 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설정토록 한다.

다섯째, 재가보호서비스는 보호대상 노인의 장애수준과 수발상태를 고려하여 '팩키지'로 제공토록 한다. 독거노인의 경우 가정봉사원·가정간호·식사배달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며, 중중 이상 노인의 가족수발자의 경우에는 가정봉사원·가정간호·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경중은 주간보호를, 중중과 최중중은 가정봉사원을 강조하여 정도에 따라 서비스를 차별화하여 제공토록 하였다. 가정봉사원서비스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노인들이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가정간호는 비공식적 보호수준에 상관없이 ADL 제한 정도에 따라 제공토록 하였다. 또한 주간보호서비스는 ADL 6개 모두 제한된 최중중인 경우는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으며, 단기보호서비스는 수발자가 없는 독거노인의 경우 서비스 제공에서 제외하였다.

여섯째, 장기요양보호서비스 공급확대는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한다. 단계적인 공급확대 계획은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의 장애수준, 가족수발 상태에 '경제적 계층'을 감안하여 설정토록 한다.

이와 같은 공급원칙 하에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공급확대는 1차적으로 경제적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의 장애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수발 여건이 나쁠수록 우선적인 확대대상으로 삼아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표 1>에서와 같이 1단계의 서비스 공급대상은 B₁, B₂, C₁, C₂, C₃로 최중중의 독거노인과 배우자수발자 노인, 그리고 중중의 독거노인과 70세 이상 배우자수발자 노인으로 설정하였다. 2단계의 서비스 공급대상은 (1단계 + A₁, B₃, B₄, C₄, C₅)로, 최중중의 자녀수발자와 중중의 69세 이하 배우자수발자와 맞벌이 자녀수발자, 그리고 경중의 독거노인이 추가대상으로 설정되었다. 3단계의 서비스 공급대상은 (2단계 + A₂, A₃, A₄, A₅, B₅)로, 중중의 전업주부 자녀수발자와 경중의 배우자 및 자녀수발자가 추가대상으로 설정되었다.

5) 본고에서는 이용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년도 노인 복지욕구 및 생활실태조사)의 한계상 수발자의 건강상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 수발자의 연령(70세 기준)으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표 1.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단계별 공급모형

구 분	수발자 없는 독거노인	수발자 있음			
		배우자 수발자		자녀 수발자	
		70세 이상	69세 이하	맞벌이부부	전업주부
경 중	A ₁	A ₂	A ₃	A ₄	A ₆
중 중	B ₁	B ₂	B ₃	B ₄	B ₆
최중중	C ₁	C ₂	C ₃	C ₄	C ₆

주: 는 1단계, 는 2단계, 는 3단계로 공급되는 것을 의미함.

3.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종류별 대상노인 추계

1) 장기요양보호서비스 대상노인 추계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종류별 대상노인을 추계하기 위하여, 우선 시설보호 대상노인을 규범적인 방법에 의하여 추정하였다. 즉, 보호대상 노인의 장애수준과 수발상태를 고려하여 시설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비율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범적으로 결정하고, 그 나머지 비율은 재가보호를 통하여 보호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건강상태가 최중중이면서 수발자가 없는 재가 독거노인인 경우 모두 시설입소대상으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일정한 비율대로 시설에 입소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시설입소를 제외한 장애인은 재가보호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표 2. 노인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종류별 대상자 추계방안

(단위: %)

구 분	현재 재가노인										
	수발자 없는 독거노인	시설보호 대상노인					수발자 없는 독거노인	재가보호 대상노인			
		수발자 있음						수발자 있음			
		배우자 수발자		자녀 수발자				배우자 수발자		자녀 수발자	
70세 이상	69세 이하	맞벌이 부부	전업 주부		70세 이상	69세 이하	맞벌이 부부	전업 주부			
경 중	0	0	0	0	0	100	100	100	100	100	
중 중	50	30	20	30	10	50	70	80	70	90	
최중중	100	70	50	70	30	0	30	50	30	70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을 추계한 결과, 총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은 64만 1천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19.0%이며, 그 중 재가보호 대상노인은 51만 3천명으로 15.2%, 시설보호 대상노인은 12만 8천명으로 3.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표 3 참조).

장애수준별로는 최중중이 5만 1천명으로 1.5%, 중중이 34만 7천명으로 10.3%, 최중중이 24만 4천명으로 7.2%로 각각 추계되었다. 장애수준별 재가보호 대상노인은 최중중이 2만 1천명으로 0.6%, 중중이 25만명으로 7.4%, 경중이 7.2%이며, 시설보호 대상노인은 최중중이 2만 9천명으로 0.9%, 중중은 9만 7천명으로 2.9%, 경중은 2천명인 0.05%로 각각 추계되었다.

또한 수발상태별 재가보호노인은 독거노인이 4만 7천명으로 1.4%, 70세 이상 배우자수발 노인이 47천명으로 1.4%, 69세 이하 배우자수발 노인이 7만 6천명으로 2.3%, 맞벌이부부 자녀수발 노인이

16만 7천명으로 5.0%, 전업주부 자녀수발 노인이 17만 6천명으로 5.2%로 각각 추계되었다.

〈표 3〉 노인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종류별 대상노인 인구 추계¹⁾(2000년)

(단위: 명)

구 분	소계	독거노인	재가보호 대상노인(A)				시설보호 대상노인 ²⁾ (B)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A)+(B)
			배우자 수발자		자녀 수발자			
			70세 이상	69세 이하	맞벌이 부부	전업 주부		
경 중	241,954	13,442	20,163	26,884	94,725	86,740	1,931	243,885
중 중	249,877	33,605	23,524	45,702	67,535	79,511	96,945	346,822
최중중	21,241	0	3,024	3,361	4,736	10,120	29,317	50,558
합 계	513,072	47,047	46,711	75,947	166,996	176,371	128,193	641,265

주: 1) 〈표 2〉에 의거한 추정치임.

2) 시설보호 노인은 현재 재가노인 중 시설보호 필요노인을 추계한 수치에 기존 시설보호 노인을 합한 수치임.

2)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단계별 확충계획에 따른 대상노인 추계

추계된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 중에서 노인가구의 소득수준, 건강상태 및 수발자 유형을 근거로 하여 단계별 확충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표 4.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단계별 확충방안

구 분	확충 기준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가구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경우(1998년 보사연 조사자료 기준) 최중중의 경우에는 독거노인 및 수발자가 배우자인 경우 중중인 경우에는 독거노인 및 수발자인 배우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가구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경우(1998년 보사연 조사자료 기준) 최중중의 경우에는 권체를 대상 중중의 경우에는 전업주부의 자녀수발자를 제외한 권체를 대상 경중의 경우에는 독거노인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가구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경우(1998년 보사연 조사자료 기준) 최중중, 중중 및 경중에 해당하는 모든 노인을 대상(수발상태 관계없이 권체)

1단계(2005년 달성)에서 장기요양보호 대상인구는 총 99,052명으로, 이 중에서 시설보호 대상 49,683명, 재가보호 대상 49,369명으로 추계되었다. 이는 시설보호 목표인구의 38.8%, 재가보호 목표인구의 9.6%에 해당한다. 또한 시설보호 대상인구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47%, 재가보호 대상인구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46%에 해당하며, 1단계에서 재가 및 시설보호대상인구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2.9%에 해당한다.

2단계(고령화율 10% 도달시점)에서 장기요양보호 대상인구는 총 200,001명으로, 이 중에서 시설보호 76,289명, 재가보호 123,712명으로 추계되었다. 이는 시설보호 목표인구의 59.5%, 재가보호 목표인구의 24.1%에 해당한다. 또한 시설보호 대상인구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2.26%, 재가보호 대상인구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3.67%에 해당하며, 2단계에서 재가 및 시설보호대상인구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5.9%에 해당한다.

3단계(2015년경 목표)에서 장기요양보호 대상인구는 총 342,852명으로, 이 중에서 시설보호 79,867명, 재가보호 262,985명으로 추계되었다. 이는 시설보호 목표인구의 62.3%, 재가보호 목표인구의 51.3%에 해당한다. 또한 시설보호 대상인구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2.37%, 재가보호 대상인구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80%에 해당하며, 3단계에서 재가 및 시설보호대상인구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0.2%에 해당한다.

3단계에서 제외된 대상인구를 위한 필요 시설·인력 확충은 민간시장기능(실비 및 유료부담)의 활성화 유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표 5.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단계별 확충계획에 따른 대상노인 추계

구 분	(단위: 명, %)		
	1단계 (2005년)	2단계 (고령화율 10% 도달시점)	3단계 (2015년)
시설보호(a)	49,683	76,289	79,867
재가보호(b)	49,369	123,712	262,985
합계(a+b)	99,052	200,001	342,852
a/(방안의 시설보호 목표 인구)	38.8	59.5	62.3
b/(방안의 재가보호 목표 인구)	9.6	24.1	51.3
a/(65세 이상 인구)	1.47	2.26	2.37
b/(65세 이상 인구)	1.46	3.67	7.80
(a+b)/(장기요양보호 필요 인구)	15.5	31.2	53.5
(a+b)/(65세 이상 인구)	2.94	5.93	10.17

4. 재가·지역사회보호서비스의 필요공급량 설정기준

장기요양보호 재가·지역사회보호서비스 항목은 가정봉사원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가정간호서비스, 식사·목욕·전화서비스로 설정하고, 각 서비스유형별 공급횟수는 <표 6> 과 같이 설정하였다.

① **가정봉사원서비스** 일본의 경우 매주 1~2회, 1회 1~3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주당 3시간에서 9시간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가정봉사원 1명당 실제로 주 1회 평균 3.3시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요보호 노인이나 가족은 주 1회 6.5시간 서비스를 희망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건강상태에 따라 주당 최소 3시간에서 21시간까지 가정봉사원 서비스가 공급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한편, 독거노인, 70세 이상의 배우자수발자, 맞벌이 자녀수발자의 노인들은 실제로 가사활동이나 개인활동, 정서적 지지 등에서 보다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가정봉사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② **주간보호서비스** 수발부담이나 위험도가 높은 가족에게 우선하여 배려하되, 거동이 가능한 노인의 욕구를 보완시키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평균적으로 주간보호시설에서 실시하는 기간에 맞추어서 수발부담이 높은 가족에게 최대 주 5회가 제공되도록 하였다.

③ **단기보호서비스** 일본의 경우 1회 7일 이내의 이용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연 84일까지 가능토록 되어 있다. 여기서는 단기보호서비스가 수발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발자가 없는 노인은 서비스 제공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며, 수발자 가족에게 최소 45일(년)을 기준으로 노인의 보호 및 장애수준에 따라 최대 90일(년)까지 공급토록 하였다.

④ **가정간호서비스** 일본의 경우 일반환자에 대한 가정방문횟수는 주 3일이며, 급성중증 환자의

경우는 한 달에 14일에 한하여 횟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보건소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소의 방문간호사업지침에 의하면 방문빈도는 외상노인의 경우 주 1회, 통원환자는 월 1회, 재가환자는 3개월에 1회로 설정되어 있으나, 2000년 10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가정간호 관련 시행령에서 주 2회까지 가정방문에 대한 의료보험 지급을 명문화하였기 때문에 최중중 노인의 경우는 주 2회를 공급토록 하였다. 또한 가정간호사는 노인의 건강문제만을 보고 가족의 지원수준에 따른 지원강도의 차이는 다른 재가서비스로 보완한다는 가정 하에 가족의 지원정도와 관계없이 노인이 같은 장애수준을 가지면 같은 빈도의 가정간호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⑤ **식사배달서비스** 일본의 경우 센터사업인 데이케어센터 사업으로 65세 이상 식사를 하기 어려운 독거노인 등에 대해 소정의 요금으로 주 4회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식사배달서비스는 하루에 최대 2회를 기준으로 설정, 최중중 노인의 경우 일주일에 최대 14회가 공급 가능토록 하였다. 독거노인에 우선적으로 공급되며 식사배달시 가정봉사원이 함께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벌이 자녀수발자 노인은 독거노인과 같은 수발위험군에 있다고 고려되므로 이에 준하는 공급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⑥ **목욕서비스** 일본의 경우 고도의 신체적 손상이 있는 노인에게는 주 1회 목욕서비스 제공이 고려되고 있다. 전국의 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서비스에서 제공될 수 있으며, 독거노인 및 고령배우자 수발자, 맞벌이 자녀수발자 등 수발위험군과 고도 장애노인을 파악하여 최중중 노인의 경우 최대 주당 2회까지 고려될 수 있다.

⑦ **전화서비스** 전국의 노인복지관, 가정봉사과전센터나 시설에서 제공될 수 있으며, 독거노인 및 고령배우자 수발자, 맞벌이 자녀수발자 등 수발위험군과 고도 장애노인을 파악하여 최중중 노인의 경우 최대 하루 2회까지 고려될 수 있다.

표 6. 재가·지역사회 장기요양보호서비스 공급내용

구 분	서비스 내용	수발자 유형				
		수발자 없는 독거노인	배우자 수발자		자녀 수발자	
			70세 이상	69세 이하	맞벌이 부부	전업 주부
경 중	1) 가정봉사원	9시간/주	6시간/주	3시간/주	9시간/주	3시간/주
	2) 주간보호	5회/주	5회/주	3회/주	5회/주	3회/주
	3) 단기보호	-	50일/년	50일/년	50일/년	50일/년
	4) 가정간호	1회/12주	1회/12주	1회/12주	1회/12주	1회/12주
	5) 식사배달	2회/일	-	-	2회/일	-
	6) 목욕서비스	1회/주	1회/주	2회/일	1회/주	2회/일
	7) 전화서비스	1회/일	1회/일	5회/주	1회/일	5회/주
중 중	1) 가정봉사원	15시간/주	15시간/주	6시간/주	15시간/주	6시간/주
	2) 주간보호	-	3회/주	3회/주	3회/주	3회/주
	3) 단기보호	-	70일/년	70일/년	70일/년	70일/년
	4) 가정간호	1회/4주	1회/4주	1회/4주	1회/4주	1회/4주
	5) 식사배달	2회/일	-	-	2회/주	-
	6) 목욕서비스	2회/주	1회/주	1회/주	2회/주	1회/주
	7) 전화서비스	1회/일	1회/일	1회/일	1회/일	1회/주
최중중	1) 가정봉사원	21시간/주	21시간/주	12시간/주	21시간/주	12시간/주
	2) 주간보호	-	-	-	3회/주	-
	3) 단기보호	-	90일/년	90일/년	90일/년	90일/년
	4) 가정간호	2회/주	2회/주	2회/주	2회/주	2회/주
	5) 식사배달	2회/일	-	-	2회/일	-
	6) 목욕서비스	2회/주	2회/주	2회/주	2회/주	2회/주
	7) 전화서비스	2회/일	1회/일	1회/일	2회/일	1회/일

5. 장기요양보호 시설 및 인력의 필요공급량 추계 방법 및 가정

1) 재가·지역사회 장기요양보호서비스

(1) 추계방법

① 가정봉사원서비스 및 가정간호서비스

- 서비스 공급량(S)
 - = 그룹별 노인의 수 × 그룹별 서비스 제공빈도(일주일 기준) × 그룹별 서비스 제공시간(1회 기준)
 - (예) 서비스 공급량(S) = 1,000명 × 2회/주 × 2시간(1회 기준) = 4,000시간
- 가정봉사원, 방문간호사 인력(M)
 - = 필요한 서비스 공급량(S) / 법정 1인당 총근무시간(일주일 기준)
 - ※ 법정 총근무시간에서 평균 이동시간 등을 뺀 시간을 분모로 사용하여야 함.

② 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

- 이용노인수(S)
 - = 그룹별 노인의 수 × 1년 중 서비스를 이용하는 총일수 / 365
 - ※ 주간보호시설은 일주일에 5~6회 이용하기 때문에 이 경우 분모값은 365에서 260~312로 바뀌어야 할 것임.
 - (예) 단기보호서비스 이용노인수(S) = 1,000명 × 45 / 365 = 120명(1일 평균)
- 인력(M)
 - = 이용노인수(S) / 법정 1인당 담당노인수

(2) 추계가정

① **가정봉사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가정봉사원 80명당 가정봉사원과 견센터 1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추계하였다. 인력은 가정봉사원의 경우 1주에 44시간 근무하는 full time 근무로 상정하되 이동시간(2시간/일)을 감안하여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은 6시간/일인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1인당 3시간 2명에게 서비스 가능)하였다. 사회복지사는 법령 기준대로 가정봉사원 80인당 1인을 상정하고, 그 외 시설장, 보조원, 운전사 등 3인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하였다.

② **주간보호**: 주간보호시설은 이용가능인원 20명당 1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인력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생활보조원이 이용자 10인당 1인이 필요한 것으로 가정하고, 시설장 1인, 사회복지사 1인, 물리치료사(간호조무사) 1인, 취사부 및 보조원·운전기사 1인 중 겸직을 고려하여 1개소당 3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하였다.

③ **단기보호**: 단기보호시설은 이용가능인원 10명당 1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인력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생활보조원이 이용자 5인당 1인이 필요한 것으로 가정하고, 그 외에 시설장 1인, 사회복지사 1인, 간호사(간호조무사) 1인, 취사부(세탁부) 1인 중 겸직을 고려하여 3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하였다.

④ **가정간호**: 가정간호사 파견시설은 보건소 간호사수를 고려하여 8.5명당 가정간호사 파견시설

1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보호대상을 저소득층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가정간호사 파견기관을 보건소로 한정하여 고려하였다. 병원가정간호시험사업 결과 가정간호사 1인이 월 80회 방문을 하는 것이 손익분기점으로 계산되고 있는데, 이는 주당 약 20회 방문, 1회당 2.2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 가능하다. 일주에 44시간 근무하며 하루에 4건을 방문한다면 이동시간과 방문시간을 합하여 건당 2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가정간호사의 경우 1주에 44시간 전일(full time) 근무하는 것으로 상정하되 이동시간(4시간/일)을 감안하여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은 4시간/일인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1인당 1시간 4인에게 서비스 가능)하였다.

2) 시설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시설보호서비스를 위한 필요시설은 장기요양보호시설 입소대상자수/ 0.9(병상이용률)를 하여 필요한 총 요양병상수를 추계하였다.⁶⁾ 이 때 요양시설 : 전문요양시설 : 요양병원의 비중은 현재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6 : 3 : 1의 비중으로 구분하여 추계하였다.

시설보호서비스 필요인력은 현행 노인복지법 및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양시설 종류별 인력 배치 기준에 근거하여 추계하였다. 시설규모를 100인 병상 기준으로 설치할 경우 요양시설(무로, 실비)은 30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전문요양시설은 51명, 요양병원은 59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6. 장기요양보호 필요시설 및 인력 추계

1) 장기요양보호 필요시설 및 인력 추계

① 시설보호: 시설보호의 시설공급부문에서는 100인 병상기준 요양시설 855개, 전문요양시설 427개 및 요양병원 142개소가 필요하나, 현재 기존 시설 이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수는 각각 798개, 399개, 133개소로 추계되었다. 시설보호의 인력공급부문에서는 요양시설 25,650명, 전문요양시설 21,777명 및 요양병원은 8,378명이 필요하나, 현재 기존 인력 이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각각 23,940명, 20,349명, 7,847명으로 추계되었다.

② 재가보호: 재가보호의 시설공급부문에서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1,660개,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부문에서 각각 13,713개, 7,802개소, 가정간호사파견시설 669개소가 필요하나, 현재 기존 시설 이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수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1,584개,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에서 각각 13,671개, 7,781개소, 가정간호사파견시설 426개소로 추계되었다. 재가보호의 인력공급부문에서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139,405명,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부문에서 각각 68,564명, 39,009명, 가정간호사 5,687명이 필요하나, 현재 기존 인력 이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가정봉사원파견시설 133,717명,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에서 각각 68,224명, 38,897명, 가정간호사파견시설 5,677명으로 추계되었다.

6) 원안에서는 재원기관을 6개월로 제한하여 필요시설 수요를 1/2로 추계하였으나, 공청회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재원기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시설보호 필요시설 및 인력이 거의 2배 가량 증가하였다.

표 7.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필요시설 및 인력 추계

	시설보호				재가보호			
	구분	필요시설	기존시설	추가필요시설	구분	필요시설	기존시설	추가필요시설
시설 개별단위	요양시설	855	57	798	가정봉사원	1,660	76	1,584
	전문요양시설	427	28	399	주간보호	13,713	42	13,671
	요양병원	142	9	133	단기보호	7,802	21	7,781
	(100인명당 기준)				가정간호	669	243	426
인력 개별단위	구분	필요인력	기존인력	추가필요인력	구분	필요인력	기존인력	추가필요인력
	요양시설	25,650	1,710	23,940	가정봉사원	139,405	5,688	133,717
	전문요양시설	21,777	1,428	20,349	주간보호	68,564	340	68,224
	요양병원	8,378	531	7,847	단기보호	39,009	112	38,897
(100인명당 기준)				가정간호	5,687	10	5,677	

2) 단계별 장기요양보호 필요시설 및 인력 추계

(1) 1단계

① **시설보호:** 시설보호의 시설공급부문에서는 100인 병상기준으로 요양시설 331개, 전문요양시설 166개 및 요양병원 55개소가 필요하나, 현재 기존 시설 이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수는 각각 274개, 138개, 46개소로 추계되었다. 시설보호의 인력공급부문에서는 요양시설 9,930명, 전문요양시설 8,466명 및 요양병원 3,245명이 필요하나, 현재 기존 인력 이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각각 8,220명, 7,038명, 2,714명으로 추계되었다.

② **재가보호:** 재가보호의 시설공급부문에서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284개,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부문에서 각각 455개, 448개소, 가정간호사파견시설은 104개소가 필요하나, 현재 기존 시설 이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수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208개,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에서 각각 413개, 427개소로 추계되었다. 재가보호의 인력공급부문에서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23,851명,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부문에서 각각 2,273명, 2,241명, 가정간호사파견시설 882명이 필요하나, 현재 기존 인력 이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가정봉사원파견시설 18,163명,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에서 각각 1,933명, 2,129명, 가정간호사파견시설 872명으로 추계되었다.

(2) 2단계

① **시설보호:** 시설보호의 시설공급부문에서는 100인 병상기준으로 요양시설 509개, 전문요양시설 254개 및 요양병원 85개소가 필요하나, 현재 기존 시설 이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수는 각각 178개, 88개, 30개소로 추계되었다. 시설보호의 인력공급부문에서는 요양시설 15,270명, 전문요양시설 12,954명 및 요양병원 5,015명이 필요하나, 현재 기존 인력 이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각각 5,340명, 4,488명, 1,770명으로 추계되었다.

② **재가보호:** 재가보호의 시설공급부문에서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575개, 주간보호시설 2,408개 및 단기보호시설 1,695개소, 가정간호사파견시설 240개소가 필요하나, 현재 기존 시설 이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수는 각각 291개, 1,953개, 1,247개소로 추계되었다. 재가보호의 인력공급부문에서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48,301명, 주간보호시설 12,040명 및 단기보호시설 8,474명, 가정간호사파견시설 2,039명이 필요하나, 현재 기존 인력 이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각각 24,450명, 9,767명, 6,233명, 1,157명으로 추계되었다.

(3) 3단계

① **시설보호**: 시설보호의 시설공급부문에서는 100인 병상기준으로 요양시설 532개, 전문요양시설 266개 및 요양병원 89개소가 필요하나, 현재 기존 시설 이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수는 각각 23개, 12개, 4개소로 추계되었다. 시설보호의 인력공급부문에서는 요양시설 15,960명, 전문요양시설 13,566명 및 요양병원 5,251명이 필요하나, 현재 기존 인력 이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각각 690명, 612명, 236명으로 추계 되었다.

② **재가보호**: 재가보호의 시설공급부문에서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874개, 주간보호시설 6,784개 및 단기보호시설 3,779개소, 가정간호사파견시설 331개소가 필요하나, 현재 기존 시설 이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수는 각각 299개, 4,376개, 2,084개, 88개소로 추계 되었다. 재가보호의 인력공급 부문에서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73,397명, 주간보호시설 33,920명 및 단기보호시설 18,896명, 가정간호사파견시설 2,811명이 필요하나, 현재 기존 인력 이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각각 25,096명, 21,880명, 10,422명, 772명으로 추계 되었다.

표 8.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단계별 확충방안에 따른 필요시설 및 인력 추계

	시설보호				재가보호				
	구분	필요시설	기존시설	추가필요시설	구분	필요시설	기존시설	추가필요시설	
1 단계	시설 III	요양시설	331	57	274	가정봉사원	284	76	208
		전문요양시설	166	28	138	주간보호	455	42	413
		요양병원 (100인병상기준)	55	9	46	단기보호	448	21	427
	인력 III	요양시설	9,930	1,710	8,220	가정봉사원	23,851	5,688	18,163
		전문요양시설	8,466	1,428	7,038	주간보호	2,273	340	1,933
		요양병원 (100인병상기준)	3,245	531	2,714	단기보호	2,241	112	2,129
2 단계	시설 III	요양시설	509	331	178	가정봉사원	575	284	291
		전문요양시설	254	166	88	주간보호	2,408	455	1,953
		요양병원 (100인병상기준)	85	55	30	단기보호	1,695	448	1,247
	인력 III	요양시설	15,270	9,930	5,340	가정봉사원	48,301	23,851	24,450
		전문요양시설	12,954	8,466	4,488	주간보호	12,040	2,273	9,767
		요양병원 (100인병상기준)	5,015	3,245	1,770	단기보호	8,474	2,241	6,233
3 단계	시설 III	요양시설	532	509	23	가정봉사원	874	575	299
		전문요양시설	266	254	12	주간보호	6,784	2,408	4,376
		요양병원 (100인병상기준)	89	85	4	단기보호	3,779	1,695	2,084
	인력 III	요양시설	15,960	15,270	690	가정봉사원	73,397	48,301	25,096
		전문요양시설	13,566	12,954	612	주간보호	33,920	12,040	21,880
		요양병원 (100인병상기준)	5,251	5,015	236	단기보호	18,896	8,474	10,422
					가정간호	2,811	2,039	772	